

2030 지역의 약속, 실행으로 지역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내용 제안

공동제안자
기후위기대응·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
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
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

내용 제안

- 2030년 임기 내 전환·감축·적응 분야별 구체적인 목표 제시 요청
- 중앙정부 주력 사업의 목표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의 자체 목표 제시 요청
- 실증 또는 실행의 구체적인 전략 제시 요청

* 아래 부문(5개 부문, 12개 항목) 중 3개 이상 항목 필수 선택
* 파란색 글씨는 최소 목표치로 이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 필요

1 에너지 전환

1.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**20%** 이상 달성
* (정부 목표) 2030년까지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% 이상
2. 2025년 대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**3배**
*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GW, 발전비중 20% 이상
3. 공공분야 **RE60** 달성(녹색프리미엄 제외)
* 2030년까지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60% 달성 목표

[UN SDGs 목표 연계]

7.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대폭 확대

2

교통

1. 공공기관 무공해 차(전기차, 수소차) 100% 전환

* 신규 구매·임차 차량 100% 무공해차

2. 지자체 등록 무공해 차 전환 18% 이상

*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판매 40%, 2035년까지 70% 전기차 전환 및 수소차 보급 병행

9.4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기술 도입 확대

3

건물

1. 공공·민간 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% 이상

*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및 민간 확산, 에너지 성능 30% 이상 개선 추진

2. ‘녹색건축물 등급제’ 시행

* 2030년까지 민간신축 건축물 ZEB 5등급 수준 설계 적용(연면적 500㎡이상), 공공 신축건물 3등급 인증 목표

3. 공공 건물 단위면적당 최종 에너지 사용량 2025년 대비 10% 절감

* 2025년부터 건물 신축·증축 에너지소요량 성능 기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공공 건축물은 130kWh/m²·yr 미만 충족 필요, 2027년부터 공공 건축물 목표 에너지원단위 제도 시행

7.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향상률 2배 증대

4

폐기물·자원순환

1. 공공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50% 이상 일회용품 사용 금지

* 2030년까지 신재(virgin plastic)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30% 이상 감축

11.6 도시 폐기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도시의 1인당 부정적인 환경 영향 감소

2.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 자원순환·재활용센터* 등 설치·확대

* 재활용센터: 재사용(Reuse), 재활용(Recycle), 제로웨이스트, 수리·수선 기능이 있는 곳

* 생활권 내 폐자원 수거·재사용 기반시설과 지역 중심 순환이용체계를 확대

12.5 2030년까지 예방, 감축,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대폭 감소

3.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10kg 감축

* 2030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% 이상 감축

12.5 2030년까지 예방, 감축,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대폭 감소

5

기후적응

1. 1인당 생활권도시숲면적 2023년 기준 20% 상향

*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숲 15㎡로 확대할 계획

15.5 자연서식지 훼손 줄이고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

2. 기후 보험 도입

* 2026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 연구 및 확대 검토

13.1 기후 관련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화

6

기타 제안

* 감축, 전환 부문에 한해 정량적 수치 포함하여 제안 가능

1.

2.

3.

※ 별첨. 결의 제안 근거

1

에너지 전환

1. 재생에너지 자립율 20% 달성

-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, 2025년 발전비중 30% 이상 목표로 함, 더불어 2030년 전체 지방정부 보급 목표를 57GW로 확대할 계획
- **법률근거:**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·이행)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과정에서 산림훼손·경관침해·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 전 생태·경관 영향 검토와 인근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·이익공유·주민참여를 병행한다.
- **이행수단**
 - 지방정부 별 재생에너지 설치 가용 공간(공장 지붕·주차장·유희부지·농지 등) 발굴과 재생에너지 보급·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
 - 주택용(베란다, 옥상 등)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목표 수립하고 예산 확보, 연도별 현황 공개
 - 신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
 -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기준을 주차면수 50면으로 확대 적용 또는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
 - 교육청 협력으로 햇빛이음 시범학교를 실행하고, 2030년 전체 국공립 초·중등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

2.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

- 2024년 기준, 전국 226개의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 전력 소비 상위 TOP 20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율은 3.2%임. 소비량이 큰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자립율 확대의 현실적 목표로서 재생에너지 최소 3배 설치 제안
- REGO(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) 제도 도입으로 자가 소비로 전기요금 절감 외에 RE100 공식 이행 실적으로 인정 및 거래 가능해짐
- **법률근거:**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(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및 자가소비형 인증 제도),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옥상·베란다 등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임차가구·저소득층은 태양광 설치 혜택에서 배제되기 쉬우므로, 지역 공유형(커뮤니티) 태양광과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함께 설계한다.

○ 이행수단

- 지방정부 별 재생에너지 설치 가용 공간(공장 지붕·주차장·유허부지·농지 등) 발굴과 재생에너지 보급·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
- 주택용(베란다, 옥상 등)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목표 수립하고 예산 확보, 연도별 현황 공개
- 신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
-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기준을 주차면수 50면으로 확대 적용 또는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
- 교육청 협력으로 햇빛이음 시범학교를 실행하고, 2030년 전체 국공립 초·중등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

3. 공공분야 RE60 달성

- 정부는 2025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 편람에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88개 경영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로 'K-RE100 가입 및 이행실적'을 반영하여,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생산·소비를 선도하고 민간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함
- K-RE100은 「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'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'로 녹색프리미엄·인증서(REC) 구매·PPA·자가발전 등을 이행수단으로 인정하며, 2025년 말 기준 644개 기업·기관이 참여 중이나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세계 평균(53%)에 크게 못 미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
- **법률근거**: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(경영평가), 「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(K-RE100)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**인권·환경 고려**: 지방공기업·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할 경우 비용부담이 이용요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함께 마련한다.
- **이행수단**
 -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의 K-RE100 가입 의무화 및 이행실적 연차별 공개
 - 청사·상수도·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지붕·유허부지에 자가소비형 태양광 우선 설치
 - 공공기관 녹색프리미엄·PPA 계약 체결 기준 마련과 관련 예산 반영

1. 공공기관 무공해차(전기차, 수소차) 100% 전환

-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3.3%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은 전력, 산업, 다음 순으로 높음,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정책 추진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분야는 건물과 수송부분이므로 감축관리의 핵심 대상임
-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와 임차제도 시행 중으로 중앙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100% 변경 계획 수립(중대형 특수차량 일부 제외)
- **법률근거:**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공공기관 등의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·임차), 「대기환경보전법」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전환 과정에서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·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마련한다.

2. 2030년 지자체 무공해차(전기차, 수소차) 20% 달성

- 2025년 말 기준 등록차량 2,651만5천대 중 전기차(EV) 89만9천대, 수소차(FCEV) 4만5천대로 무공해차 전국 누적 등록 비율은 약 3.56%(서울시 2.47%)에 불과함
- 정부는 '연간 저공해 무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' 개정 고시를 통해 2030년 국내 판매 신차의 50%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2030년 누적 450만대(약 16.7% 예상)를 목표로 함
- 온실가스·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운영중인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(LEZ, Low Emission Zone) 제도는 현재 5등급 차량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2025년 기준 전체 차량의 단 0.6%만 해당되어 제도 효과는 한계에 달함
- **법률근거:**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저공해조치·운행제한지역), 「자동차관리법」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노후 경유차·화물차 운행제한은 저소득 자영업자·소상공인·화물운수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지원, 전환 유예기간, 대체수단 지원을 함께 병행한다.
- **이행수단**
 - 내연기관차 등록말소(폐차) 촉진 인센티브로 대중교통·자전거 인센티브 도입
 - 친환경차 전환지원금의 지방비 보조금 확대
 - 버스(승합), 화물, 택시의 지방비 보조금 확대
 - 버스, 화물, 택시, 렌트카 주차 및 이용시설에 대한 충전 인프라 우선 설치 확대
 - 공동·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우선 구축 및 취약계층 충전요금 지원
 -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도로 전환하고 등급 상향으로 점진적 확대

1. 공공·민간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% 이상

- 지방정부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필수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. 폭염과 한파 등의 기후 대응으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, 기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 필요
-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차지원 사업이 재개되었으나 원금 부담의 구조적 한계로 자발적 확산의 어려움 있음, 기후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 그린리모델링 확대 실행 필요
- **법률근거:**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(그린리모델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),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지방정부 조례」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쪽방·반지하·노후 임대주택 등 다양한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지를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환경권을 함께 보장한다.
- **이행수단**
 -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기후 취약계층 주거지 10% 그린 리모델링
 - 그린리모델링 지방정부 기금 마련 또는 확대

2.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

- 건물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2.8% 감축, 2035년까지 20.8%p를 추가 감축하는 것으로 가파르게 상향되어 초반에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을 갖춰야 달성 가능함
- 2025년부터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'제로에너지건축물(ZEB) 인증제'로 통합하여 관리하고, 2030년 공공 신규 건축물은 3등급 상향 인증, 연면적 500㎡ 이상 민간 건축물은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**법률근거:**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(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)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지방정부 조례」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등급제 시행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임대인-임차인 비용분담 가이드라인과 자발적 시행 유인 정책을 함께 마련한다.
- **이행수단**
 - 공공기관 소유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이행실적을 공개한 뒤 민간으로 확산

3. 공공건물 단위면적당 최종 에너지 사용량 2025년 대비 10% 이상 절감

- 2023년 COP28 한국을 포함한 118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비율 2배(4%) 확대에 합의함
-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(2025~2029)에 따라 건물 부문 수요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건축물 에너지 현황진단을 통한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가 도입됨, 정부는 2027년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도를 의무화하고, 건물 유형·면적·소재지 별로 에너지원단위 등급(A~E)을 매겨 목표 에너지원단위를 B등급 이상 설정하여 저효율 건물의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
- 국토교통부 고시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강화로 연면적 1천㎡이상 민간 신축·증축 건물 대상 1차 에너지 사용량 150kWh/㎡·yr 성능기준 필수, 공공 건축물은 130kWh/㎡·yr으로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
- **법률근거:**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», 「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(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관리),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이후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과 민간 건물 확대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(임대료·권리금·이용료)을 시범사업에서 살펴 보호 조치를 함께 마련한다.
- **이행수단**
 - 2027년 공공 기관 소유 기건축물 대상 에너지현황 진단과 목표 제시, 이행 실적 공개
 - 지역 특성에 따라 건물에너지 총량제 확대 적용을 위한 공공·대형 민간 비주거건물-민간 중소형 건물로 전면 실행 로드맵 마련과 실행

4

폐기물·자원순환

1. 공공기관 소유 다중이용시설 50%, 일회용품 사용금지 실행

- 국무총리훈령 「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」에 의거,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청사내 사용 금지 또는 반입 제한의 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속도감 있는 전환 실행 가능함
- 여러 지방정부에서 청사와 유관기관은 물론 장례식장, 체육시설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고, 쓰레기 감량으로 확인되고 있음
- 제안한 공공기관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이 직접 소유·관리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공공공간으로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에 정의된 공공 소유·위탁 다중이용시설을 의미함
- **법률근거:** 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」(1회용품사용억제 등), 국무총리 훈령 「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», 「자원순환기본법», 지방정부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
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다회용기 세척·회수 체계 구축 시 고용되는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장하고, 소규모 상인·전통시장 상인의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병행한다.

○ **이행수단**

-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으로 적용대상 규정, 1회용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·금지 조치 필요
- 공공 다중이용시설 내 부대시설의 계약 갱신과 신규 입찰시 다회용기 의무화 조건 제시 필요
- 다회용기 지원사업(세척장비, 배송·회수체계) 확대

2.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 자원순환·재활용센터 등 설치 확대

- 지역 내 재사용과 나눔, 수리·수선(Repair), 제로웨이스트·리필 물품 판매 기능을 통합한 커뮤니티 기반 자원순환 거점을 확충하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역 순환경제와 취약계층 자활 일자리를 함께 창출할 수 있음

- **법률근거:** 「자원순환기본법」(제24조 순환자원정보센터 등 자원순환 기반시설)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자원순환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연계)
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재사용센터 운영에 취약계층·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연계하여 자원순환과 사회통합을 함께 도모한다.

○ **이행수단**

- 권역별 자원순환(재사용·수리·나눔) 거점센터 지정·운영 및 예산 지원
- 사회적기업·마을공동체 협력운영모델 구축과 이용자 인센티브(탄소중립포인트) 제공

3. 1인당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 10kg 감축

-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전국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, 최종 처분에 앞서 재활용·감량 강화로 쓰레기 발생 총량 줄이기가 우선되어야 함. 1인당 연간 10L 봉투 한 개를 줄이면 인구 100만명 도시에서 연간 1,500~2,000톤의 감축 효과 기대할 수 있음

- 2024년 기준 생활계폐기물 연간 1인당 배출량 459kg로 2023년 대비 26kg증가했음 .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분리배출 되었을 때 물질재활용율은 96.2%에 달해 분리배출율은 물질재활용율을 높이는 중요임.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방정부 평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율은 2024년 기준 22.3%임. 지방정부마다 분리배출율을 높이는 수단이 필요함

- **법률근거:** 「폐기물관리법」 (생활폐기물 처리계획, 직매립 금지), 「자원순환기본법」 (자원순환성과관리, 순환이용률 목표)
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소각장·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 간 이동 완화로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주민 건강권·환경권을 침해하는 환경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보다 발생량 감축을 우선하는 정책을 설계한다.

○ 이행수단

- 1인당 연간 10L봉투 한 개 줄이기 캠페인
- 종량제 봉투 판매량 및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 공개, 목표 이행실적 연차별 공표
-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지도·교육 강화

5

기후 적응

1. 1인당 생활권도시숲면적 2023년 기준 20% 상향

- 산림청 발표 전국도시림현황통계에 의하면 2023년 평균 1인당 생활권도시숲면적은 14.07㎡로 지역별, 도시화별로 편차가 큼. 기후변화 대응(미세먼지 감소, 도심 열섬 현상 완화)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㎡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
-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3조는 산림지·습지·농지 등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국가·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기반해법(Nature-based Solutions)으로서 지역 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
- **법률근거:**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탄소흡수원의 확충),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저층주거밀집지역, 구도심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권과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, 기후 탄력성이 높은 수종을 고려한다.
- **이행수단**
 - 도시 열지도, 미세먼지농도, 거주 밀도, 녹지 접근성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녹지 조성

2. 기후 보험 도입

-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는 기후위험 대응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지역에 집중되는 불평등 문제로 드러나고 있어 기후격차를 줄이고 선별적 복지 효과의 기반이 될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 보장 정책으로 전 시민 대상 기후보험 확대 실행 필요
- 또한 기후위기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는 가운데, 현행 풍수해·재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고려한 가입률 제고,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보장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
- **법률근거:**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0조(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)
- **인권·환경 고려:** 기후재해에 가장 취약하면서도 개별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저소득 가구·소상공인·농어민·야외노동자에게 보험 혜택을 우선 고려한다.

○ 이행수단

- 시민안전보험 확대적용 또는 기후보험 신설로 온열·한랭질환·특정 감염병 진단비와 교통비, 기후 재해 사고 위로금 등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보장 제공
-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
- 지역특화형 기후재해(폭염·가뭄 등) 공제보험 상품 발굴을 위한 정부·보험업계 협의체 구성